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간편하고
빠른

온라인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활용 안내서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작성·제출



유해화학물질 1회 운반 일정량 초과시



유독물질

5,000kg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3,000kg**

환경청 또는 방재센터에
운반계획서 제출

유해화학물질 1회 **일정량**을 초과하여
운반하고자 하는 경우, 환경청 또는 방재센터에
운반계획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절차

01

운반계획서 제출
(온라인, 모바일, 팩스 등)

02

(지방)환경청 접수



03

사본 휴대

(운반자, 운전기사 또는 호송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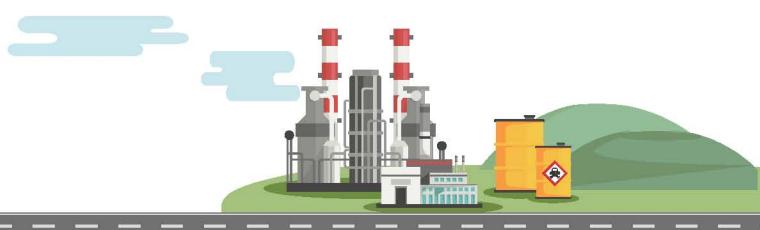


운반계획서에는 운반 경로 상 상수원 보호구역, 통행금지·제한구역 등을 제외시킨 운반경로 및 운반자, 운반시간, 휴대용 개인보호장구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행정 처분

운반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한 경우

근거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 제2항제6호	경고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



온라인 운반계획서 제출 절차 ①



화학물질관리법 종합정보시스템 (icis.mef.go.kr) 사이트 접속

온라인 제출 흐름도



세부 절차 안내

01 화학물질관리법 종합정보시스템 회원가입

회원가입

회원가입 버튼

회원가입 후 환경청·센터에서 승인 후 사용 가능

02 시스템 로그인

로그인

로그인 버튼

로그인 화면

03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신청

민원 신청

민원 신청 버튼

민원 신청 화면

① 인허가신청 ② 민원신청 ③ 운반계획서 '신청' 클릭

온라인 운반계획서 제출 절차 ②



04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작성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상호(영·한)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1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운반차량번호) 2 추가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input type="text"/>)	
유해화학물질명 3 <input type="text"/>	수량(kg) 4 <input type="text"/>	후대용 방제장비

① 운반업체 검색 ② 담당자 및 차량 등록
③ 유해화학물질명 검색 ④ 수량 및 방제장비 입력

05 경로탐색(또는 통행도로 상세내역 첨부)

차량운행경로 탐색

장소를 입력해주세요 1	POI검색
운전자 최병모 2	출발예정시간 2016-11-14 09:25 3
도착예정시간 2016-11-14 12:43:00 3	출발지 (화학물질안전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4 (여수국가산업단지) 전라남도 여수시
소요시간: 3h 18m 운행거리: 220km	탐색 검증 제출 초기화
화학물질안전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동	

① 목적지 검색 ② 출발시간 입력
③ 출발지·도착지 입력 ④ 탐색 ▶ 검증 ▶ 제출

06 '신청' 버튼 클릭(민원신청 완료)

구비서류 첨부

- 파종 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위하여 경로 탐색 기능을 권장합니다.
- 신종 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파일로 첨부합니다.
- 첨부 가능 파일 = doc, docx, xlsx, ppt, ptx, hwp, pdf, jpg, jpeg, gif, png, txt
- 전체 첨부파일의 합산 용량을 10MB 이하로 첨부하세요

첨부파일 상세 파일선택 선택된 파일 없음

수수료 결제

신청하신 9.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는(은) 수수료가 0원입니다.

신청하기

07 발급문서 인쇄

화학물질관리법 종합정보시스템

인·허가 신청 나의 민원현황 민원관리 시스템 이용안내

나의 민원현황

발급문서 조회
내가 신청한 발급 관련 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기간: 2016-11-01 ~ 2016-12-20 서식번호: 방금인쇄

조회일자: 10 중 번호: 신청ID 서식명: 업체명 신생명

1 109172 9.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화학물질안전일)-여수국 산업단지 [여수산업단지] 화학물질 2016-12-13 2016-12-14



운반자 준수사항

첫째!

운반자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여야 합니다.

※ 운반자 안전교육

- 2년에 8시간 이상 이수
(화학사고를 일으킨 경우
1년 이내 8시간 추가)
- 교육기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02-3019-6691~4)

01



02



03



넷째!

정해진 경로와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행하시고,
200km 이상 운행할 때는
중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04



05

- ※ 200km 이상 운행시 **2시간 이내마다 20분 이상씩 휴식**으로
개정 예정(2017년)
- ※ 운행 전, 후에는 적재물질의 누출 등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 발견시 즉시 보수해야 합니다.

둘째!

차량에는 물질명, 함량, 수량, 방재요령을
기재한 카드를 비치하고, 충분한 수량의
방제약품 및 **개인보호장구**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셋째!

이송할 때에는 **분진**,
증기, **가스** 등이 대기
중으로 누출되지 않도록
완벽하게 밀폐해야
합니다.

다섯째!

전용 차고지에 주차하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 ※ 부득이한 경우, 방류터이나
집수시설 등이 설치된 곳에
주차

화학사고 대처요령



첫째!

사고가 발생하면
119로 즉시 신고
합니다.



01



02



03

넷째!

폭발성·인화성·확산성
물질은 주변에 불꽃,
스파크, 증기발생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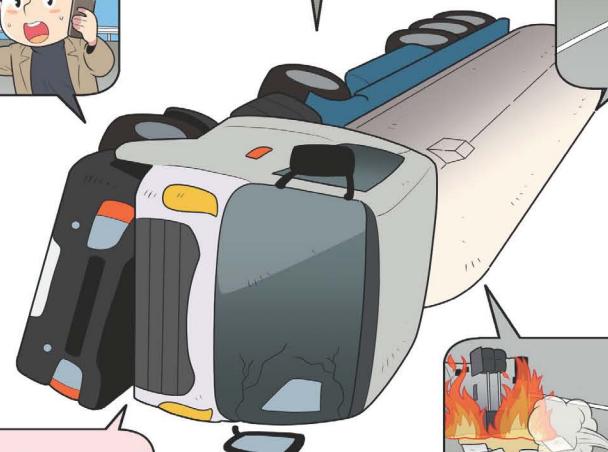


05

다섯째!
적재물질이 하수로, 우수로
등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소규모 유출의 경우에는
개인보호장구 착용 후 초동조치를 하고,
대규모 유출의 경우에는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여
안전삼각대를 설치하고 차량의
접근을 통제합니다.